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문화체육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년 6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조례의 별표1 시설 목록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문화예술시설 명칭 추가 (안 별표1)
- 나.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중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신설(안 별표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

〈 문화예술진흥법 〉

제2조(정의)

- 3. "문화시설"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
 - 나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
 - 다. 「도서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
 - 라. 「문학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
 - 마.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
 - 바.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·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
 - 사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4. 4. 18. ~ 2024. 5. 8. (20일간)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-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5)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6)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꿈빛극장란 다음에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시 설 명	기 능	위 치
성북문화예술교육 센터	교육관, 문화관, 커뮤니티 공간 등	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8길 38 (장위동 68-130)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기능 및 위치(제3조와 관련)

시 설 명	기 능	위 치
미아리고개 예술극장	공연장, 세미나, 영화상영 등	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77 (돈암동 51-49외)
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	전시장, 문화관, 체험관 등	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-1(석관동 261-125)
성북구 동네마당 뜰안	전시장, 문화관, 체험관 등	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16-27 (동선동4가 190)
성북 예향재(藝香齋)	전시장, 문화관, 체험관 등	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97 (성북동 226-37)
천장산 우화극장	공연장, 세미나, 영화상영 등	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 (상월곡동 24-348)
문화공간 이육사	전시장, 교육장, 커뮤니티 공간	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-1 (종암동 65-13)
성북역사 문화센터	전시장, 교육장, 관광안내	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1길 31 (성북동 119-5)
꿈빛극장	전문공연장	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,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4층 (길음동 1286-8)
성북문화예술교육 센터	교육관, 문화관, 커뮤니티 공간 등	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8길 38 (장위동 68-130)

[별표 2]

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(제18조와 관련)

1.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시설 사용료

가. 일반기준

- (1) 1일 대관가능 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.(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.)
- (2) 준비(연습)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로 한다.
- (3) 토·일·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.
- (4)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(방송, 영화, cf, 촬영, 녹음 등)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.
- (5) 22시 이후 철수는 준비(연습)대관료를 시간으로 나눈 비용의 200퍼센트를 적용한다.
- (6)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.
- (7)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·공휴일은 준비(연습)/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(8) 부지가액 및 건물가액 사용요율은 5퍼센트를 적용한다.

나. 대관료

시설명	사용시간	사용료(사용시간 기준/ 단위 : 원)		비고
		준비(연습)/철수	공연/행사	
공연장	오전 10:00~12:00(2시간)	28,000	56,000	부가세 포함
	오후 13:00~17:00(4시간)	56,000	112,000	
	저녁 18:00~22:00(4시간)	56,000	112,000	
	1일 10:00~22:00(10시간)	140,000	280,000	

다. 별도 대여 물품

구분	품 명	규 격	금액 (단위:원)	비고
영상	빔프로젝터	7,000 ansi	50,000	- 1일/1대

라. 문화강좌 수강료

구 분	수 강 료	비 고
문화강좌 (1인 1강좌)	월 50,000원 이하	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

2.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시설 사용료

가. 일반 기준

: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(09:00~18:00)으로 한다. (단,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)

나. 사용 요금

구 분	단 위	사용료	비고
강의실	1일 2시간 (09:00~18:00)	20,000원	

다. 문화강좌 수강료

구 분	수 강 료	비 고
문화강좌 (1인 1강좌)	월 30,000원 이하	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

3. 성북구 동네마당 쉼안 시설 사용료

가. 일반 기준

: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(09:00~18:00)으로 한다. (단,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)

나. 사용 요금

구 분	단 위	사용료	비고
강의실	1일 2시간 (09:00~18:00)	20,000원	

다. 문화강좌 수강료

구 분	수 강 료	비 고
문화강좌 (1인 1강좌)	월 30,000원 이하	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

4. 성북 예향재(藝香齋) 시설 사용료

가. 일반 기준

: 대관 기본 단위를 1일로 하며 사용 시간은 8시간(09:00~18:00)으로 한다.
(단,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)

나. 사용 요금

구 분	단 위	사용료	비고
안채, 사랑채	1일 (09:00~18:00)	100,000원	

다. 문화강좌 수강료

구 분	수 강 료	비 고
문화강좌 (1인 1강좌)	월 50,000원 이하	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

5. 천장산 우화극장 시설 사용료

가. 일반기준

- (1) 1일 대관가능 시간은 9시간(10:00~21:00)으로 한다. (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.)
- (2) 준비(연습)/철수 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.
- (3) 토·일·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.
- (4)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 (방송, 영화, CF, 촬영, 녹음 등)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.
- (5) 빔프로젝트를 포함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.(부가세 포함)
- (6)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·공휴일은 준비(연습)/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.

나. 대관료

시설명	사용시간	사용료(사용시간기준 / 단위 : 원)		비고
		준비(연습)/철수	공연/행사	
공연장	1회 / 3시간	25,000	50,000	부가세 포함
	1일 / 9시간	70,000	150,000	

다. 문화강좌 수강료

구 분	수 강 료	비 고
문화강좌 (1인 1강좌)	월 50,000원 이하	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

6. 문화공간 이육사 시설 사용료

가. 일반 기준

: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(09:00~18:00)으로 한다. (단,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)

나. 사용 요금

구 분	단 위	사용료	비고
교육장	1일 2시간 (09:00~18:00)	20,000원	

다. 문화강좌 수강료

구 분	수 강 료	비 고
문화강좌 (1인 1강좌)	월 30,000원 이하	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

7. 성북역사문화센터 시설 사용료

가. 일반 기준

: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(09:00~18:00)으로 한다. (단,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)

나. 사용 요금

구 분	단 위	사용료	비 고
교육장	1일 2시간 (09:00~18:00)	20,000원	

다. 문화강좌 수강료

구 분	수 강 료	비 고
문화강좌 (1인 1강좌)	월 30,000원 이하	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

8. 꿈빛극장 시설 사용료

가. 일반기준

- (1) 1일 대관가능 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.(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.)
- (2) 준비(연습)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로 한다.
- (3) 토·일·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.
- (4)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(방송, 영화, cf, 촬영, 녹음 등)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.
- (5) 22시 이후 철수는 준비(연습)대관료를 시간으로 나눈 비용의 200퍼센트를 적용한다.
- (6) 빔 프로젝터를 제외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.
- (7)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·공휴일은 준비(연습)/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.

나. 대관료

사용시간	사용료(사용시간 기준/ 단위 : 원)			비 고
	준비(연습)/철수	공 연	토·일·공휴일(공연)	
10:00~12:00(2시간)	50,000	100,000	120,000	부가세 포함
13:00~17:00(4시간)	100,000	200,000	240,000	
18:00~22:00(4시간)	100,000	200,000	240,000	
10:00~22:00(10시간)	250,000	500,000	600,000	

다. 대여 물품

품 명	규격	금액 (단위:원)	비고
프로젝터	7,000 ansi	20,000	
핀마이크		20,000	
피아노	185	20,000	조율 별도
덧마루	1800×900(12ea)	30,000	대관자 설치·철수
댄스플로어	무대전면	40,000	테이프 별도

9.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시설 사용료

가. 일반 기준

: 대관 기본 단위를 1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1일 8시간(09:00~18:00)으로 한다. (단,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)

나. 사용 요금

구 분	단 위	사용료	비고
교육장	1시간 (09:00~18:00)	10,000원	

다. 문화강좌 수강료

구 분	수 강 료	비 고
문화강좌 (1인 1강좌)	월 30,000원 이하	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

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문화예술시설을 별표1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이 용 철